



금감원, 표준위험률 개선

채원영 연구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위험률 적용 대상 담보를 확대하고 담보별 실제경험률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위험률¹⁾ 수준을 조정할 계획임.

- 현재 생명보험은 사망·암 발생 등 12개 담보²⁾에 대해 표준위험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1개 담보에만 적용하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 사망·장해 관련 담보와 암 발생·입원담보의 경우 실제경험률과 현행 표준위험률이 상이하여 경험통계를 반영한 표준위험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³⁾

■ 손해보험에서는 현행 표준위험률 적용 대상 담보 확대가, 생명보험에서는 현행 표준위험률 수준의 조정이 주요 내용임.

- 손해보험의 경우 현행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하향조정하고,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암 발생 등 질병관련 위험률로 확대함.
 - 암위험률, 질병입원위험률 등 5개 담보에 대한 표준위험률을 신규산출하고, 재해사망과 재해입원 등 5개 담보에 대해서는 기초통계 집계 후 2014년에 개정할 예정임.
- 생명보험의 경우 담보별 경험통계⁴⁾를 반영하여 사망·장해 관련 담보의 표준위험률은 현행 수준보다 하향조정하고 암 발생·입원 담보 등의 표준위험률은 현행 수준보다 상향조정함.

1) 표준위험률은 최소한도의 지급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표준책임준비금 계산 시 사용되는 위험률로서, 보험가격이 자유화되더라도 책임준비금은 일정수준 이상 적립토록 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생존·사망률, 퇴직연금 사망률, 재해율(사망, 장해), 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재해),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4-4③).
 3) 사망·장해 관련 담보의 경우 평균 여명 증가로 실제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표준위험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암발생·입원담보의 경우 조기 검진율 증가 및 의료기관 이용 빈도 증가로 실제경험률이 표준위험률을 상회하고 있음.
 4) 2008년 4월~2011년 3월까지의 3개년간 경험통계를 사용함.

〈표 1〉 담보별 표준위험률¹⁾ 증감 현황

(단위:%)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일반사망 ²⁾	△ 16.4 ↓	△ 13.1 ↓	△ 19.6 ↓	△ 28.2 ↓
재해사망 ³⁾	△ 19.4 ↓	△ 23.0 ↓	기초통계 집계 후 '14년 개정	
개인연금사망	△ 16.5 ↓	△ 18.8 ↓	해당사항 없음	
암사망	△ 13.1 ↓	△ 10.0 ↓	금번 개정 시 신규산출	
암발생	9.0 ↑	25.4 ↑		
암수술	2.9 ↑	27.7 ↑		
암입원	△ 2.1 ↓	8.9 ↑		
질병입원	7.5 ↑	24.3 ↑		
질병 및 재해입원	△ 4.7 ↓	10.5 ↑	해당사항 없음	
재해입원	△ 11.5 ↓	△ 4.7 ↓	기초통계 집계 후 '14년 개정	
재해장해	△ 11.5 ↓	△ 20.7 ↓		
재직 중 사망	△ 31.5 ↓	△ 30.1 ↓		

주: 1) 현행 적용 중인 표준위험률대비 증감률.

2)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

3)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번 표준위험률 조정으로 보험회사들이 실제경험률에 맞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손해 보험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없었던 암발생·입원담보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위험률 개선, 금융감독원, 8/31)